##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5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 안호영·송옥주·김윤덕

김수흥・이상직・한병도

윤준병 · 김성주 · 이용호

한병도 의원(10인)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공공주도 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설립되었으며, 공사가 도시개발사업,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 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 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투자진 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 나.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신설).
- 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13호 신설).
- 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9제1항제3호 신설).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02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지역
  -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제36조의9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제58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

다)"을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
	<u>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
	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지역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이하 "투자진흥지구"이라 한
	<u>다)로 지정할 수 있다.</u>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u>을 갖춘 지역</u>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
	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
	<u>야 한다.</u>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u>및 면적</u>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

<신 설>

용

-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제11조 의5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새만금위 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 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7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

-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12. (생 략) <신 설>

13. (생략)

③ ~ ⑧ (생 략)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 제36조의9(사업) ①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② (생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 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

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 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 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1. ~ 12. (현행과 같음)
-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에 관한 사항
-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 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	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